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0 선고 2020가단49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10. 20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24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대여금 68,610,41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376,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확인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2014다208255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4. 8. 11.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9. 17. 대여금 68,610,410원 등에 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0. 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성립 전이나 그 후의 채권의 부존재, 불성립, 소멸 등의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는 이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4644호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4,376,542원을 인출해 갔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를소송사기로 고소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일부인 2,000,000원만을 돌려준 채 나머지 22,376,542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바,피고는 원고에게 22,376,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갑 제2호증,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는 그집행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를 지급받은 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기로 고소(수원지방법검찰청성남지청 2014형제41293호)로 하였으나 2015. 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위 고소 사건에서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합의하였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거나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여경은